

제 1 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 장 위원회 구성

제 2 장 심의·의결 절차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 1 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출범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2014년 2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활동하였으며, 선거기사(사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구 분	운 영 기 간	선 거 일	비 고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 구 성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단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협회,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에 추천을 의뢰했으며,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다.

【 위원 명단 】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장	박 기 동	만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김 도 윤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연장자순)	유 원 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시민단체)	

구 분	성 명	주요약력	추천단체	비 고
위 원 (연장자순)	임 성 규	전 한국의료조정중재원 감정위원 현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김 동 기	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현 변호사	민주당	
	문 재 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문 종 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이 은 경	청와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변호사	새누리당	
	이 후 동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3. 기 능

심의위원회는, 첫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둘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마지막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중앙당에 한함)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사진.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오광건 사무총장, 문재완 위원, 김도윤 부위원장, 박기동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정학철 위원장 직무대행, 유원옥 위원, 이은경 위원, 김동기 위원, 이후동 위원, 문종대 위원〉

제 2 장

심의 · 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심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심의팀과 심의보조원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각종 선거기사를 모니터하여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보도를 조사하여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각각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8조).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2 제6항).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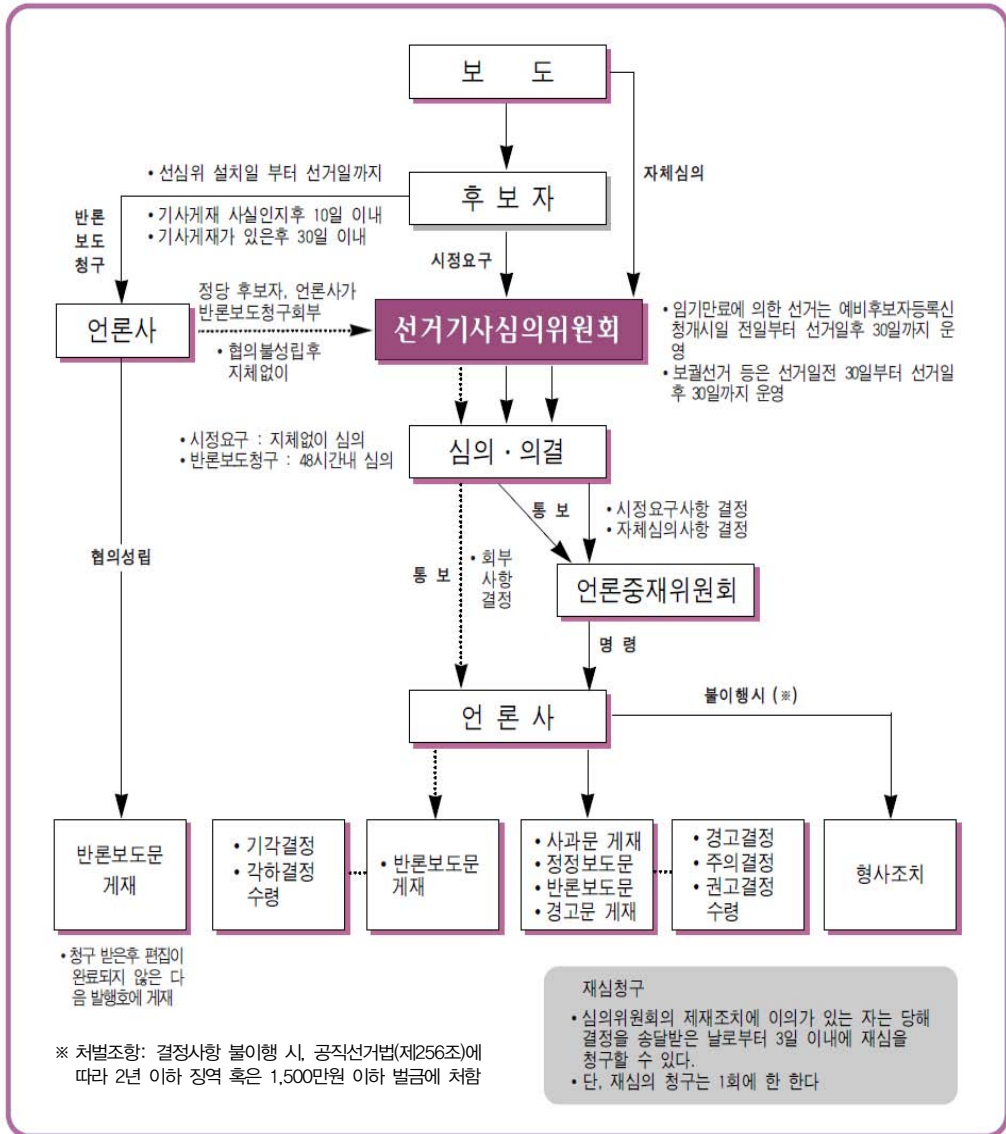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에 한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4 제2항, 제3항).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심의·의결 흐름도】



제 3 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 (위원회 관련)

2014년 2월 13일에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 개정되어 공표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개정된 선거법 중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제256조이다.

선거법 제256조는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인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제8조의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개정 전 4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 (2014년 3월 31일)

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발족과 그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심의기준 제정에 상응하여 여론조사관련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선거기간 등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하였다. 개정된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 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결과와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를 밝히도록 하면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표기하도록 하였다(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둘째,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의 심의기간을 ‘선거기간 중’에서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까지’로 수정하는 등 심의기준의 ‘선거기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선거기사를 심의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